



철근적재용 받침목 다발 선적 중 낙하

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의 선창내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받침목 다발(철근 적재용)을 선적하던 중 받침목 다발이 줄걸이에서 빠져 낙하하면서 선창 내부에 있던 재해자를 강타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
 - 크레인 등에 매달린 화물 낙하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출입시킴
- 받침목 다발 체결용 노끈 해체
 - 받침목을 묶어놓았던 노끈을 해체하여 받침목 2묶음을 타 용도로 뺀 상태에서 운반하여 받침목 다발이 쉽게 줄걸이에서 빠져 낙하함

TI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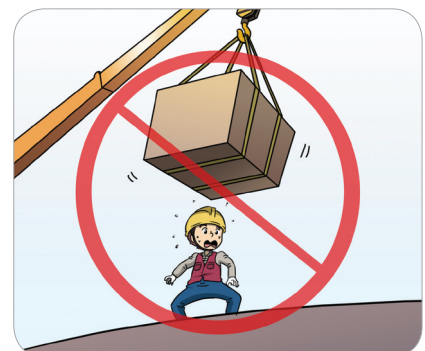
안전작업

1 출입금지조치 실시

- 크레인 등에 매달린 화물 낙하위험 장소에는 근로자출입을 통제

2 받침목 다발 체결용 노끈 해체금지

- 받침목 다발의 낙하·붕괴 등의 예방을 위해 묶어놓았던 노끈 해체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다시 묶거나 별도의 낙하·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 실시



위험장소 출입통제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(작업지휘자의 지정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(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)





철근적재용 받침목 다발 선적 중 낙하

화물 낙하위험 장소에는 출입하지 마세요!

